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두산(이하 “회사”라 한다)의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이하 “자문단”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자문단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규정(이하 “이 규정”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직무와 권한)

자문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할 권한을 가진다.

제 2 장 구 성

제4조 (구성 및 임기)

(1) 자문단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2) 자문단은 3인이상으로 구성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자문위원인 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은 즉시 그 직을 상실하며, 회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이후 최초의 자문단회의 소집 전까지 후임 자문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 (이하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 두산 계열회사의 임직원 및 그 배우자

② 기업집단 두산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최대주주 및 상법에 따른 특수관계인

(4)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공석이 된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다시 선임하며,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 (자문단장)

(1) 자문단은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자문단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자문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 회의시 의장이 된다.

(3) 자문단장은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4) 자문단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자문단장이 지명하는 위원,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선임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이하 “직무대행자”라 한다). 단, 자문단장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직무대행자 선임을 위한 결의를 위한 절차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참석자 중 선임 위원, 연장자의 순으로 주재하기로 한다.

제 3 장 회 의

제6조 (소집권자)

(1) 자문단 회의는 자문단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자문단장의 유고시에는 제5조 제4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각 위원은 자문단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자문단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자문단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주일 이상 자문단을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문단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자문단을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소집절차)

(1) 자문단 회의 소집함에는 회의일을 정하여 늦어도 회의일 직전일까지 각 자문위원에 대하여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2) 자문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8조 (결의방법)

(1) 자문단의 결의는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2) 자문단은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자문단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부의사항)

자문단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외이사후보의 추천
2. 사외이사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자문단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일체 사항
3. 기타 자문단장이 자문단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한 사안

제10조 (사외이사 후보의 선정)

(1) 자문단은 회사의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과 이사회의 전문성 제고에 적합한 사외이사후보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2) 자문단은 해당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자 하는 사외이사의 수의 2배이내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선정하여, 사외이사후보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3) 자문단은 선정한 사외이사후보 명단과 함께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한 기준 및 후보의 인적사항, 경력, 특이사항 등 기타 제반 관련 사항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1) 자문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자문단은 자문단의 결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4 장　　보　칙

제12조 (간사)

(1) 자문단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2) 간사는 자문단장의 지시에 따라 자문단의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

제13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2013. 2. 4.)

이 규정은 2013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